

##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7. 20.(수) 16:3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 회의록 확인

## 바. 의결사항

### (1) WiBro 사업자의 허가조건 이행완료 승인에 관한 건 - (2011-42-144)

-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KT와 SKT가 WiBro사업 허가시 부여된 허가조건과 이행계획의 실적 제출('11.4월)에 대하여 원안대로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의결함

#### ○ 주요 내용

##### ① KT 이행점검 결과

- (투자비) '06~'11년까지 총 10,908억원을 투자하여 이행계획(10,431억원) 대비 477억원을 초과 투자함으로써 104.6%의 이행률을 달성하였음
- (커버리지) 전국 82개시 기준, 서비스 이용 가능 면적은 26.0%(계획 24.3%), 인구 대비 88.0%(계획 83%)로 계획 대비 107.1%, 103.5% 달성
- (설비설치) 기지국, 중계기, 교환설비 등 총 54,834식을 설치하여 이행계획(47,003식) 대비 116.7% 달성

##### ② SKT 이행점검 결과

- (투자비) '06~'11년까지 총 8,297억원을 투자하여 이행계획(8,250억원) 대비 47억원을 초과 투자함으로써 100.6%의 이행률을 달성하였음
- (커버리지) 전국 82개시 기준, 서비스 이용 가능 면적은 10.9%(계획 9.1%), 인구 대비 72.4%(계획 67.8%)로 계획 대비 119.2%, 106.6% 달성
- (설비설치) 기지국, 중계기, 교환설비 등 총 24,348식을 설치하여 이행계획(20,811식) 대비 117.0% 달성

### (2)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건 - (2011-42-145)

-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도매제공 고시에 의거하여 다량구매 할인을 산정방안,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하여 다량구매 할인을 산정방안은 제2안으로,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함

#### ○ 주요 내용

##### ① 다량구매할인을 산정방안(필요시 재산정)

- MVNO 가입자 20만명 이상(할인율 1%) ~ 120만명 이상(할인율 6%) 기준으로 다량 구매할인율을 산정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우선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이동통신 시장상황 평가를 실시하여 다량구매할인율이 시장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재산정(제2안)

## ② 기타사항

-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데이터 전용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를 추가할인(데이터 도매대가 1MB 당 110원 → 55원)하고, '12년 이후 추가할인 지속여부는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결정
- (자가소비 판단기준) 도매제공 받은 서비스의 20% 이상을 자기 또는 계열회사, 그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시 제4조의 '주된 목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MVNO 활성화를 위해 사업초기 1년은 자가소비 적용을 유예
- (재제공 판단기준) ①재제공 사업자의 별정4호 등록, ②재제공 사업자와 MVNO간 연대책임 계약체결 등이 이루어지면, 고시 제10조의 '재제공 시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

## (3)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 (2011-42-146)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창원문화방송(주)과 진주문화방송(주)의 법인합병에 관한 변경허가 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 사. 보고사항

### (1) 「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안)」에 관한 사항

-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4대 핵심과제 및 20대 세부과제를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내용(4대 핵심과제 및 20대 세부과제)

#### 1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 ① 지금보다 10배 이상 빠른 네트워크 구축
- ② 주파수 영토 확장을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
- ③ 미래 인터넷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
- ④ 글로벌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 강화
- ⑤ 세계와 함께하는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2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 ⑥ 일하고 즐기는 방식을 혁신할 7대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 ⑦ 창의적인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제2의 벤처붐 조성
- ⑧ 방송통신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

- ⑨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원칙 확립
- ⑩ 방송통신 전략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 3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 ⑪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⑫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⑬ 광고시장 규모를 확대하여 미디어산업 성장을 견인
- ⑭ 2012년 지상파TV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인 종료
- ⑮ KBS와 EBS가 세계적 수준의 공영방송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 4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강화

- ⑯ 방송통신서비스 요금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
- ⑰ 누구나 방송통신의 혜택을 누리도록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 강화
- 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
- ⑲ 건전하게 인터넷을 즐기는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 확산
- ⑳ 사이버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한 사이버 세상 구현

## (2) 「전파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주파수 할당·손실보상을 위한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 설립, 안전한 전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공주파수 관리체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오남석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음

### ○ 주요내용

- ① 주파수할당·손실보상을 위한 Clearing House 설립
  - 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의 설립근거, 임원, 자금조달, 예산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9조의3 내지 안 제59조의9 신설)
  - 전파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파진흥기금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의 용처와 관리·운용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68조의2 내지 안 제68조의5 신설)
- ② 안전한 전파환경의 조성
  -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의 설립근거, 재원 및 사업범위 근거 마련(안 제44조의3 신설)
  - 우주전파재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중개, 구매대행과 수입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근거 마련(안 제58조의2제10항 및 안 제84조제4호의2 신설)
  - 방통위가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5조의2)

③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개선을 통한 공공주파수 관리체계 마련(안 제18조의2·제18조의3 신설, 안 제22조제4항, 안 제24조제8항 신설, 안 제25조제2항, 안 제25조제4항 신설)

④ 기타 현행법의 미비사항 보완 등

- 전파응용설비의 양도, 법인의 합병, 상속 등 승계사유 발생 시 시설자 지위의 승계를 규정한 제23조의 준용 근거 마련(안 제58조제3항)
- 국제적·국가적 행사를 위해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해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외국인을 전파사용료 징수 대상에 포함(안 제67조제1항)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정부 출연 근거 마련(안 제66조의3제2항)

### (3)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의 범위, 재송신의 대가산정 기준, 분쟁해결 절차보완 등에 대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내용

①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관련

- (제1안) 의무재송신 범위를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전면 확대
- 의무재송신 범위를 현재 KBS1·EBS에서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하되, 무상 의무재송신 대상에 현행 KBS1·EBS에서 KBS2(일부)를 추가 포함하고, KBS2는 수신료만으로 운영되는 시점까지는 재송신 관련 일부 대가 산정을 인정하며, MBC·SBS·지역민방은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시키되 대가 인정
- (방송법 제78조 제2항) 의무재송신 범위를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1개로 제한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KBS2에 대한 유예조항 신설
- (방송법 제78조 제3항) 동시중계방송권만 명시되어있는 관련 조항에 공중송신권도 포함시켜 의무재송신의 저작권 범위를 명확화
- (제2안) KBS 상업광고 폐지 시점까지 현행제도 유지
- 의무재송신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를 도입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②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 관련

- 재송신 대가는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분쟁조정 및 협상의 가이드

라인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정부안을 별도 마련

-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방송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로 ‘재송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칭)’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3개월 한시)

③ 「분쟁해결 절차 보완」 관련

- (조정 절차 개선) 방송분쟁 시 당사자 일방의 조정 신청에 대한 상대방의 불응 절차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방송법시행규칙 제15조) 정비 추진
- (직권조정 제도 도입) 재송신 관련 대규모 분쟁 발생으로 국민의 시청권에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의 중대 사안 발생 시, 방통위가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재정 제도 도입) 방송분야의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상 '재정' 제도를 방송분야에 확대 적용

④ 「기타 정책·제도적 사항」 관련

- 위성방송사업자(KT SkyLife)가 의무재송신 대상 이외의 지상파방송(KBS2, MBC, SBS, 지역민방)을 지상파방송의 허가받은 권역내·외로 재송신 시 모두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방송법 제78조4항)
-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구현을 위해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의 경우에만 승인받도록 절차 개선 필요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 7. 22(금).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8:35)